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실용신안권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실용신안등록증 발급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특허청장이 실용신안권자에게 발급하는 실용신안등록증을 서면뿐만 아니라 전자문서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18. 3. 15. ~ 4. 25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법 제19조제1항”을 “법 제20조에서 준용하는 「특허법」 제86조제1항”으로, “발급”을 “발급(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법 제19조제2항”을 “법 제20조에서 준용하는 「특허법」 제86조제2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발급”을 “발급(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)”으로 한다.

제17조제1항 중 “제120조의6까지”를 “제120조의7까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